

안 내 문

수 신 : 전체 교원

제 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특허 등)에 대한 개인명의 출원·등록 예방을 위한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통하여 도출된 특허 등 연구성과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의 이름으로 출원·등록하여 연구기관이 소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명으로 소유하는 부당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안내드리오니 연구성과를 개인명으로 출원·등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특허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개인명의 출원·등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명의 특허성과의 정의 및 유형

가. 개인명의 특허성과의 정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성과를 개인의 이름(연구자 또는 제3자)으로 출원·등록하여 개인이 소유한 특허(개인·연구기관 공동 명의 포함)

나. 개인명의 특허성과의 유형

- 특허 소유권자에 개인이 포함된 모든 경우를 의미
- 단독 개인명의, 2인 이상의 개인 공동명의, 기관·개인 공동 명의

2. 관련규정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당부분 발췌)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6. 7. 22.>

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4호의2·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	2년

나. 「과학기술기본법」(해당부분 발취)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원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6. 22., 2015. 12. 22.>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3. 관련 공문

- 한국연구재단 성과확산팀-11521(2019.11.04.)

「정부 R&D사업의 연구성과(특허 등) 소유권 및 관련정보 기재 안내」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장-